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19. . . (제 회)	

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박능후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19. . .

법제처 심사를 마침

1. 의결주문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중앙자활센터의 명칭을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 변경하고, 자활지원 사업의 수행·관리 및 효과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기록·관리하는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이 개정(법률 제16239호, 2019. 1. 15. 공포, 7. 16. 시행)됨에 따라,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정관, 이사회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,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·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위탁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19. 3. 29. ~ 5. 8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2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수급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참가하여 받은 소득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

가.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활기업이 실시하는 사업

나. 제20조제1항에 따른 자활근로의 대상사업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

제21조의2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⑧ 보장기관은 법 제18조의4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과 그 교육에 관한 업무를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자활복지개발원(이하 “자활복지개발원”이라 한다)에 위탁한다.

제21조의2제9항(종전의 제8항) 중 “제7항까지”를 “제8항까지”로 한다.

제21조의4 및 제21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1조의4(자활복지개발원의 정관) 자활복지개발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목적

2. 명칭
3.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
4. 임원 및 직원의 임면(任免)
5. 이사회(會)의 운영
6.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
7. 회계
8. 정관의 변경
9. 내부 규정의 제정·개정 및 폐지

제21조의5(자활복지개발원의 이사회) ① 자활복지개발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.

1. 사업계획 및 예산·결산
 2. 주요 재산의 취득·관리 및 처분
 3. 임원 및 직원의 임면
 4. 정관의 변경
 5. 내부 규정의 제정·개정 및 폐지
 6. 그 밖에 자활복지개발원 운영에 관하여 심의·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
-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.
- ③ 이사장은 원장을 제외한 이사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
-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제21조의6 및 제21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1조의6(자활복지개발원의 회계) 자활복지개발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.

제21조의7(국유재산의 무상대부) 법 제15조의6제2항에 따라 자활복지개발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·양여하거나 사용·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·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자활복지개발원이 계약으로 정한다.

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6조의2(자활기금의 적립)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적립해야 하는 자활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의 적립금액은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정한다. 이 경우 적립금액의 하한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

②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기금의 적립계좌를 별도로 개설하고 기금을 적립해야 한다.

제26조의3제2항 중 “시·도”를 “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26조의5제1항 중 “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”를 “시·도지사”로 한다.

제26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6조의8(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·운영) 보건복지부장관

은 법 제18조의6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·운영에 관한 업무를 자활복지개발원에 위탁한다.

제27조제2항 중 “호선(互選)한다”를 “호선한다”로 한다.

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중앙자활센터는”을 “자활복지개발원은”으로, “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”를 “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”를 “법 제15조의3제1항제1호”로, “조사·연구·교육”을 “사업의 개발 및 평가”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”를 “법 제15조의3제1항제2호”로, “사업의 평가”를 “조사 및 연구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법 제15조의2제1항제3호”를 “법 제15조의3제1항제3호”로, “광역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”를 “광역자활센터,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“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”를 “법 제15조의3제1항제4호 및 제5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법 제15조의3제1항제7호에 따른 고용지원서비스의 연계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원 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무
6. 법 제15조의3제1항제8호에 따른 자활 관련 기관의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·훈련 및 지원에 관한 사무
7. 법 제15조의4제2항에 따른 원장과 감사의 추천 및 같은 조 제4항에

다른 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무

8. 법 제1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과 그 교육에 관한 사무

9. 법 제18조의6제1항에 따른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·운영에 관한 사무

부 칙

이 영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의2(소득평가액의 범위 및 산정기준)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소득평가액은 제5조에 따른 실제소득에서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	제5조의2(소득평가액의 범위 및 산정기준)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8. (생략)	1. ~ 8.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9. <u>수급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참가하여 받은 소득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</u> <u>가.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활기업이 실시하는 사업</u> <u>나. 제20조제1항에 따른 자활근로의 대상사업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</u>
10. ~ 12. (생략)	10. ~ 12. (현행과 같음)
제21조의2(자산형성의 대상 등)	제21조의2(자산형성의 대상 등)
① ~ ⑦ (생략)	① ~ ⑦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⑧ <u>보장기관은 법 제18조의4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과 그 교육에 관한 업무를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자활복지</u>

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신청, 대상자 선정, 지원금 지급 및 회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21조의4(중앙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) ① 법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자활센터(이하 “중앙자활센터”라 한다)는 정관을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자활센터가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경비를 보조받은 경우에는 경비 사용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
제21조의5(중앙자활센터의 임원) ① 중앙자활센터에는 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이사 와 감사 1명을 두며,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.

개발원(이하 “자활복지개발원”이라 한다)에 위탁한다.

⑨ ----- 제8항까지-----

-----.

제21조의4(자활복지개발원의 정관) 자활복지개발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목적
2. 명칭
3.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
4. 임원 및 직원의 임면(任免)
5. 이사회의 운영
6.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
7. 회계
8. 정관의 변경
9. 내부 규정의 제정·개정 및 폐지

제21조의5(자활복지개발원의 이사회) ① 자활복지개발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.

1. 사업계획 및 예산·결산

② 원장과 감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(選任)하되,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되,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원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.

1. 자활사업·사회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2. 정보통신·교육훈련·경영·경제·금융 분야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3.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4급 이상의 공무원

4.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지역자활센터협회의 장

④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이사를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

⑤ 그 밖에 임원의 자격, 선임,

2. 주요 재산의 취득·관리 및 처분

3. 임원 및 직원의 임면

4. 정관의 변경

5. 내부 규정의 제정·개정 및 폐지

6. 그 밖에 자활복지개발원 운영에 관하여 심의·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

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.

③ 이사장은 원장을 제외한 이사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

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
정관으로 정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제26조의2(자활기금의 설치) ①

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자활
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은
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
바에 따라 특별시·광역시·특
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
하 “시·도”라 한다) 또는 시·
군·구에 설치할 수 있다.

② 기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
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
사회복지 관련 기금과 통합하여
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
기금은 다른 사회복지 관련 기

제21조의6(자활복지개발원의 회
계) 자활복지개발원의 회계연도
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.

제21조의7(국유재산의 무상대부)

법 제15조의6제2항에 따라 자활
복지개발원에 국유재산을 무상
으로 대부·양여하거나 사용·
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·
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국유재
산의 관리청과 자활복지개발원
이 계약으로 정한다.

제26조의2(자활기금의 적립) ①

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특별
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
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
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또는
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적립해
야 하는 자활기금(이하 “기금”
이라 한다)의 적립금액은 시·
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
장이 정한다. 이 경우 적립금액
의 하한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
한다.

②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

<u>금과 계정을 분리하여 운용·관리하여야 한다.</u>	<u>·구청장은 기금의 적립계좌를 별도로 개설하고 기금을 적립해야 한다.</u>
제26조의3(기금의 재원) ① (생략) ② 국가는 기금의 재원 확충을 위하여 <u>시·도에</u> 보조할 수 있다.	제26조의3(기금의 재원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<u>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</u>----- --.
제26조의5(기금의 운용·관리 등) ① 기금은 <u>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</u>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운용·관리한다. ②·③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26조의5(기금의 운용·관리 등) ① ----- <u>시·도지사</u> ----- ----- ----- -----. 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27조(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 및 구성) ① (생략)	제26조의8(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·운영)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의6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·운영에 관한 업무를 자활복지개발원에 위탁한다. 제27조(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 및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

③ (생략)

제42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① (생략)

② 중앙자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1.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 지원을 위한 조사·연구·교육에 관한 사무
2.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자활 지원을 위한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무
3. 법 제1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의 평가에 관한 사무
4.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자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 및 정보네트워크 구축·운영에 관한 사무

② ----- 호선한다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42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자활복지개발원은 -----
-----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-----

-----.

1. 법 제15조의3제1항제1호----- 사업의 개발 및 평가-----
2. 법 제15조의3제1항제2호----- 조사 및 연구-----
3. 법 제15조의3제1항제3호----- 광역자활센터,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-----
4. 법 제15조의3제1항제4호 및 제5호-----

5. <u>법 제18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용지원서비스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무</u> 6. <u>제21조의5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이사의 추천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</u>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	5. <u>법 제15조의3제1항제7호에 따른 고용지원서비스의 연계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원 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무</u> 6. <u>법 제15조의3제1항제8호에 따른 자활 관련 기관의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·훈련 및 지원에 관한 사무</u> 7. <u>법 제15조의4제2항에 따른 원장과 감사의 추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무</u> 8. <u>법 제1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과 그 교육에 관한 사무</u> 9. <u>법 제18조의6제1항에 따른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·운영에 관한 사무</u>
-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	
연 락 처	(044) 202 - 3076